

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

「국토기본법」 제2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목적

-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추진·지원을 위해 「국토기본법」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

2. 위탁기관

- 기관명 : 국토연구원
 - 대표자 : 강 현 수
 - 주 소 :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

3. 위탁업무

-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, 세부업무내용은 위탁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따름

4. 위탁기간 :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